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85
----------	------

제출년월일 : 2018.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시정의 철학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알기 쉽고, 시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국(局)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
  - 안전행정국→행정안전국, 도시주택국→도시디자인국, 환경에너지교통국→환경교통국
-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신성장전략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징수과를 신설함.(안 제7조)
  - 민생경제국 内 신성장전략과 및 징수과 편제
- 복지업무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참여와 권리도모 등을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함.(안 제8조)
  - 노인장애인과 명칭 변경 및 장애인복지과 신설
- 시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 및 건강한 공중보건 업무 추진을 위해 단원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 단원보건소 内 건강증진과 편제
- 기구조정 내용(요약)
  - 4급 기구 조정(명칭변경7)
    - 기획경제국 → 민생경제국(명칭변경)
    - 복지문화국 → 문화복지국(명칭변경)
    - 도시주택국 → 도시디자인국(명칭변경)

- 환경에너지교통국 → 환경교통국(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안전국(명칭변경)
  - 대부해양관광본부 → 대부해양본부(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 외국인주민지원본부(명칭변경)
- 5급 기구 조정(신설4, 국 재편6, 명칭변경10)
- 민생경제국 内 신성장전략과 신설
  - 민생경제국 内 징수과 신설
  - 문화복지국 内 장애인복지과 신설
  - 단원보건소 内 건강증진과 신설
  -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 정책기획관(부시장 직속, 명칭변경)
  -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 → 민생경제국 관광과(국 재편)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국 재편)
  - 도시주택국 건설과 → 환경교통국 건설도로과(국 재편, 명칭변경)
  - 환경에너지교통국 녹지과 → 도시디자인국 녹지과(국 재편)
  - 환경에너지교통국 공원과 → 도시디자인국 공원과(국 재편)
  - 복지문화국 세월호수습지원단 → 행정안전국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국 재편, 명칭변경)
  - 지역경제과 → 상생경제과(명칭변경)
  - 세정과 → 공정조세과(명칭변경)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과(명칭변경)
  - 건축과 → 건축디자인과(명칭변경)
  -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명칭변경)
  -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과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정책과(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지원과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과(명칭변경)
  - U-정보센터 → 도시정보센터(명칭변경)
  - 상록구 세무1과 → 상록구 세무과(명칭변경)

## ○ 소관사무 추가

- 관광과에 마이스산업 업무 추가
- 도시재생과에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업무 추가
- 건축디자인과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 추가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 결과 : 붙임5

- 입법예고 : 2018. 10. 29. ~ 11. 7.
- 예고결과 : 의견 제출 34건(반영 : 6건, 미반영 : 28건)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민선7기 조직개편 조직도(안) : 붙임8

< 불임 1 >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제5조의2제1항 중 “미래전략관” 을 “공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관” 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및 시민협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안전행정국·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도시주택국 및 환경에너지교통국” 을 “민생경제국·문화복지국·도시디자인국·환경교통국·행정안전국”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국에 상생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예산법무과, 관광과, 일자리정책과, 공정조세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건전재정, 의회협력, 법제, 송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 개발 및 마케팅,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7.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복지시책 및 기초생활 추진에 관한 사항
4.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출산,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육계획(중장기, 연차별) 수립 · 시행, 보육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품위생 · 유통, 위생업소, 공중위생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녹지과, 공원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디자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 · 보호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자전거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 공공·빅데이터, 통계에 관한 사항
7.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상록수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두고 단원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8조 중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대부해양본부”로, “다문화지원본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대부해양본부”로,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대부정책, 대부개발, 대부건축, 대부녹지, 대부기반시설, 대부환경에 관한 사항
- 나. 해양개발 및 수산업, 연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산업정책과”를 “산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다문화지원본부”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를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한다.

제20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가목 중 “U-정보센터소장”을 “도시정보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U-정보센터”를 “도시정보센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록구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를 두고, 단원구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를 둔다.

별표 1 중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란,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란, 안산시 U-정보센터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란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을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안전국”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경제국” 을 “민생 경제국”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세무1과, 세무2과” 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복지문화국” 을 “문화복지국”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부해양관광본부” 를 “대부해양본부” 로, “다문화지원본부” 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 교통국” 을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U정보센터” 를 “도시정보센터” 로 한다.

②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을 “민생경제국장, 대부 해양본부장” 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박 부 옥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팀장 이 선 희
	담당자 성명·전화	한 대 희 (행정 3108)

< 불임 2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생 략)</p> <p>1. (생 략)</p> <p>2. <u>사업소 :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다문화지원본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u></p> <p>3. (생 략)</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업소 :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u></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①</p> <p>시장 직속으로 <u>미래전략관</u>을 둔다.</p> <p>② 부시장 직속으로 <u>공보관</u>, 감사관을 둔다.</p> <p>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미래전략관은 정책연구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p> <p>2.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제5조의2(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①</p> <p>----- <u>공보관</u> -----.</p> <p>② ----- <u>정책기획관</u> -----.</p> <p>③ ----- .</p> <p>(삭 제)</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및 시민협치에 관한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안전행정국·기획경제국·복지문화·도시주택국 및 환경에너지통국</u>을 둔다.</p>	<p>제6조(국의 설치) -----</p> <p>----- <u>민생경제국·문화복지국·도시디자인국·환경교통국 및 행정안전국</u> -----.</p>
<p>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p> <p><u>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체육진흥과 및 정보통신과</u>를 둔다.</p> <p>② <u>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p>	<p>제7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p> <p><u>민생경제국에 상생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예산법무과, 관광과, 일자리정책과, 공정조세과 및 징수과</u>를 둔다.</p> <p>② <u>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u>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u>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 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u></p> <p><u>3.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p> <p><u>4.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p> <p><u>5. 평생학습,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p> <p><u>6.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u>7.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u></p>	<p><u>2.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u></p> <p><u>3. 예산, 건전재정, 의회협력, 법제, 송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p> <p><u>4. 관광정책, 개발 및 마케팅,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u></p> <p><u>5.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u>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u></p> <p><u>7.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u></p>
<p><u>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마이스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정책과를 둔다.</u></p> <p><u>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성과관리, 청년·인구정책,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u>2. 예산, 건전재정, 법제, 송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p> <p><u>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u></p> <p><u>4.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국제협력,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u></p> <p><u>5.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u></p> <p><u>6. 일자리정책,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u></p> <p><u>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문화·종교·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u></p> <p><u>2.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u></p> <p><u>3.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복지시책 및 기초생활 추진에 관한 사항</u></p> <p><u>4.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u></p> <p><u>5.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u></p> <p><u>6. 여성정책, 출산,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u>7. 보육계획(중장기, 연차별) 수립·시행, 보육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8. 식품위생·유통, 위생업소, 공중위생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u></p>
<p><u>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u></p>	<p><u>제9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도시디</u></p>

현 행	개 정 안
<p>국에는 복지정책과·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문화예술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p> <p>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복지 시책 및 기초생활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여성정책, 출산,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보육계획(중장기, 연차별) 수립·시행, 보육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li> <li>7. 식품위생·유통, 위생업소, 공중위생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li> </ol>	<p>자인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녹지과, 공원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p> <p>② 도시디자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li> <li>4.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li> <li>5.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보호에 관한 사항</li> <li>6.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li> </ol>
<p>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p> <p>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li> <li>3.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li> <li>6.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li> </ol>	<p>제10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p> <p>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교통, 자전거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li>6.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li> </ol>

현 행	개 정 안
<p><u>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u></p> <p><u>제11조(환경에너지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에너지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u></p> <p><u>②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u></li> <li><u>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3.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li> <li><u>4.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 · 보호에 관한 사항</u></li> <li><u>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6. 교통, 자전거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u></li> <li><u>7.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li> </ol>	<p><u>제11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둔다.</u></p> <p><u>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 · 교육, 후생복지,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u></li> <li><u>3.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4.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5.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6.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 공공 · 빅데이터, 통계에 관한 사항</u></li> <li><u>7.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u></li> </ol>
<p><u>제13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u></p>	<p><u>제13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상록수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두고, 단원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u></p>
<p><u>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u>대부해양관광본부</u>, <u>산업지원본부</u>, <u>평생학습원</u>, <u>상하수도사업소</u>, <u>다문화지원본부</u>, <u>U-정보센터</u>, <u>차량등록사업소</u>, <u>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u>를 둔다.</u></p>	<p><u>제18조(설치)</u></p> <p><u>-----</u></p> <p><u>대부해양본부</u>,</p> <p><u>-----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u></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생략)</p> <p>1. <u>대부해양관광본부</u>에는 <u>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u>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대부도 일원의 정책·도시개발·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p> <p>나. <u>관광정책,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u></p> <p>다. <u>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u></p> <p>2. <u>산업지원본부</u>에는 <u>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u>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라. (생략)</p> <p>마~파. (생략)</p> <p>3.~4. (생략)</p> <p>5. <u>다문화지원본부</u>에는 <u>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u>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u></p> <p>나. (생략)</p> <p>다. (생략)</p> <p>라. (생략)</p> <p>6. <u>U-정보센터소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나. (생략)</p> <p>다. (생략)</p> <p>라. (생략)</p> <p>7.~8. (생략)</p>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현행과 같음)</p> <p>1. <u>대부해양본부</u>----- <u>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u>-----.</p> <p>가. <u>대부정책, 대부개발, 대부건축, 대부녹지, 대부기반시설, 대부환경에 관한 사항</u></p> <p>나. <u>해양개발 및 수산업, 연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다. (삭제)</p> <p>2. ----- <u>산업진흥과</u>,-----.</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파.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5. <u>외국인주민지원본부</u>----- <u>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u>-----.</p> <p>가. <u>외국인주민지원본부</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6. <u>도시정보센터소장</u>-----.</p> <p>가. <u>도시정보센터</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7.~8. (현행과 같음)</p>
<p>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p>	<p>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록구에 행정지</p>

현 행	개 정 안																																																
<p><u>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를 둔다 .</u></p>	<p><u>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를 두고, 단원구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를 둔다.</u></p>																																																
<p><b>【별표 1】</b>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th>소재지</th></tr> </thead> <tbody> <tr> <td>안산시청</td><td>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td></tr> <tr> <td>안산시 상록수보건소</td><td>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td></tr> <tr> <td>안산시 단원보건소</td><td>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td></tr> <tr> <td>안산시 농업기술센터</td><td>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td></tr> <tr> <td><u>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u></td><td>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td></tr> <tr> <td>안산시 산업지원본부</td><td>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td></tr> <tr> <td>안산시 평생학습원</td><td>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td></tr> <tr> <td>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td><td>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td></tr> <tr> <td><u>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u></td><td>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td></tr> <tr> <td><u>안산시 U-정보센터</u></td><td>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td></tr> <tr> <td>안산시 차량등록사업</td><td>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td></tr> </tbody> </table>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u>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u>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u>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u>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u>안산시 U-정보센터</u>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p><b>【별표 1】</b>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th>소재지</th></tr> </thead> <tbody> <tr> <td>안산시청</td><td>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td></tr> <tr> <td>안산시 상록수보건소</td><td>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td></tr> <tr> <td>안산시 단원보건소</td><td>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td></tr> <tr> <td>안산시 농업기술센터</td><td>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td></tr> <tr> <td><u>안산시 대부해양본부</u></td><td>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td></tr> <tr> <td>안산시 산업지원본부</td><td>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td></tr> <tr> <td>안산시 평생학습원</td><td>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td></tr> <tr> <td>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td><td>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td></tr> <tr> <td><u>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u></td><td>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td></tr> <tr> <td>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td><td>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td></tr> <tr> <td>안산시 차량등록사업</td><td>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td></tr> </tbody> </table>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u>안산시 대부해양본부</u>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u>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u>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u>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u>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u>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u>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u>안산시 U-정보센터</u>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u>안산시 대부해양본부</u>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u>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u>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현 행	개 정 안
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 소	소  <u>안산시</u> <u>도시정보센터</u>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312 (이동)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